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8565 |
|----------|-------|

발의연월일 : 2026. 4. 23.

발 의 자 : 김용만 · 박지원 · 최민희
이용선 · 김 윤 · 이인영
김 현 · 황명선 · 박용갑
강준현 · 박상혁 · 이정문
박찬대 · 이훈기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활용하여 AI를 통해 독립유공자를 희화화하는 영상을 만들거나 독립유공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게시글이 SNS 등에 게재되었음에도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확산된 바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를 조롱 또는 모욕하는 영상·음성·이미지 등 정보의 제작·유포·유통을 금지하고,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중지·시정을 명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

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거부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현하고 국민의 보훈의식과 역사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및 제44조제3항 신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독립유공자에 대한 모욕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독립유공자를 조롱 또는 모욕하는 영상·음성·이미지 등 정보를 제작·유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u><신 설></u></p> | <p><u>제9조의2(독립유공자에 대한 모욕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독립유공자를 조롱 또는 모욕하는 영상·음성·이미지 등 정보를 제작·유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u></p> <p><u>2.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u></p> <p><u>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u></p> <p><u>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기관</u></p> |

제44조(과태료) ①·② (생략)

<신설>

의 장애인에게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